

# 공 보

**제689호 2019. 3. 20.(수)**

선 결	기관의 장

##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9-26호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대행 고시 ..... 2  
 거창군 고시 제2019-29호 도로명주소 고시 ..... 3

##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9-349호 거창창포원 명칭공모 결과 발표 ..... 5  
 거창군 공고 제2019-350호 통행제한 변경 공고(대곡교) ..... 6  
 거창군 공고 제2019-366호 거창군계획시설(시설:유통업무설비)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8  
 거창군 공고 제2019-381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1  
 거창군 공고 제2019-382호 2020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  
 참여마을 모집 공고 ..... 27

회 람									
--------	--	--	--	--	--	--	--	--	--

#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대행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거창군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 대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5일

## 거 창 군 수

1. 지적측량수행자 명칭 :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지역본부 거창지사
2. 사업지구의 명칭 :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 지동지구
3. 사업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 경남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433번지 일원
  - 나. 면 적 : 120필지, 33,070m<sup>2</sup>
4. 대행 업무 : 지적재조사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5. 기타 문의 :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지적재조사담당(055-940-3322)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3. 20.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창지길 10 등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실(☎055-940-3311~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몽석리 229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암로 622-40	2009-12-28	2019-03-20	가북면 용암리를 지나 해인사로 가는 길임을 반영한 도로	
2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1542-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지하동3길 36-15	2009-12-28	2019-03-20	마을 터가 못 위에 뜬 연꽃과 같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세번째 도로	
3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889-41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창지길 10	2009-04-01	2019-03-20	옛 신지면의 창고가 있어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 (가칭)거창창포원 명칭공모 결과 발표

국민의 휴식있는 삶을 위하여 조성한 창포원에 대하여 공원전체를 나타내기 위하여 포괄할 수 있는 명칭 공모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2019년 3월 18일

거 창 군 수

1. 공고기간 : 2018. 11. 16. ~ 12. 31.
2. 선호도 조사 및 심의 : 2019. 1. 1. ~ 3. 6.
2. 당선작품 : 없음

공고 제2019 - 350호

[] 통행의 금지·제한  
 [] 차량의 운행 제한 ] **(변경) 공고**

「도로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 통행의 금지·제한  
 [] 차량의 운행 제한 을 **(변경)**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4일

**거 창 군 수**

도로의 종류	군도	노선명	9호선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당초 : 차량 전면 통행 금지 변경 : 총중량 2.5톤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	구간	대 곡 교 (남하면 양항리 1048 ~ 남하면 양항리 960)
기 간	당초 : 2019년 2월 25일부터 ~ 해제시까지 변경 : 2019년 2월 25일부터 ~ 교량재가설 및 보수시까지 ※ 2019년 3월 15일부터 적용		
이 유	당초 : 대곡교 파손으로 인한 차량 통행 제한 변경 : 교량 노후로 인한 중차량 통행 위험		
그 밖의 사항 : 우회도로	심소정 솔숲 → 남하교(국도24호선) → 타이어뱅크(지방도1089호선) → 창동교사거리(군도 23호선) → 스포츠파크(군도19호선) → 심소정		
붙임: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다음지도)			



# 통행금지 및 우회도로 구역



## 거창군계획시설(시설:유통업무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서북부경남거점 산지유통센터(APC) 시설보완·증축사업』 추진에 따른 거창군계획시설(시설:유통업무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 3. 19.

###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4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시설:유통업무설비)
  - 명 칭 : 서북부경남거점 산지유통센터(APC) 시설보완·증축사업
3. 사업시행 개요

종류	위 치	사업규모(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결정 면적	금회시행				
			대지 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유통 업무 설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47번지 일원	94,523.9	37,263.0	기존 11,157.8 증축 1,556.0	기존 13,049.28 증축 1,510.0	거고 제2008-43호 (2008.9.17.)	

4. 사업 시행자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수(농업기술센터소장)
5.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참조

8. 의견제출 및 열람 :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서류는 위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서식)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37,263	37,263					
1	거창읍 대평리	1347	창	33,819	33,819		거창군			
2	거창읍 대평리	543-22	구	42	42		거창군			
3	거창읍 대평리	1329-4	도	51	51		거창군			
4	거창읍 대평리	1344-2	답	167	167		거창군			
5	거창읍 대평리	1345-2	답	248	248		거창군			
6	거창읍 대평리	1347-15	창	1,208	1,208		거창군			
7	거창읍 대평리	1347-16	답	456	456		거창군			
8	거창읍 대평리	1347-11	답	1,098	1,098		거창군			
9	거창읍 대평리	1350-6	답	66	66		거창군			
10	거창읍 대평리	1350-7	답	13	13		거창군			
11	거창읍 대평리	1350-8	답	95	95		거창군			

##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20일

### 거 창 군 수

####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중복으로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는 등 이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상위 규정에 명시된 조항 삭제

-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5항, 제6항
- 제20조(연가일수에의 공제) 제1항, 제2항

나. 연가사용 촉진을 위해 제한근거 삭제(안 제19조제2항)

- 연가사용을 촉진을 위해 국외여행 등 특별한 경우에만 연가 7일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한 조항을 삭제

다. 육아시간의 확대 및 운영기준 신설(제23조제4항)

-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 1일 1시간 사용

⇒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 사용

라.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기준 신설(제23조제12항)

- 일(日) 최소 4시간 이상 근무, 시간외근무 명령 불가,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은 같은 날 사용 불가

마.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별표4)

-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팩스[940-3169], 전화[940-3192] 또는 E-mail[hoho881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입법예고문 추가 게재 :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와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으면 공무수행을 위해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제2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제23조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별표 4 중 배우자 출산의 경조사별 휴가일수 “5일”을 “10일”로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u></p> <p><u>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u></p> <p><u>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u></p> <p><u>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으면 공무수행을 위해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u></p> <p><u>⑤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u></p> <p><u>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u></p>	<p><u>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u></p> <p><u>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u></p> <p><u>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으면 공무수행을 위해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u></p>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으며, 월할 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개월-해당 연도 휴직기간(개월)/12개월} \* 해당 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제23조(특별휴가) ① (생 략)

③ (생 략)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 공무원인 경우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제23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

한 사람만 해당한다.

⑤~⑪(생략)

<신설>

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⑤~⑪ (현행과 같음)

⑫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별표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별표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대 상	일 수	구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결 혼	본인	5
	자녀	1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u>5</u>	출 산	배우자	<u>10</u>
입 양	본인	2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관계법령

###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18. 9. 21.] [법률 제15522호, 2018. 3. 20., 타법개정]

**제63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
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

5.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3.,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5. 5. 18., 2015. 12. 29., 2017. 7. 26.>

1.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해외유학을 하게 되었을 때
3.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었을 때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 ③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제4호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2항제4호는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부터 남은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2. 12. 11.>
- 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1.>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376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개정 2013. 12. 11., 2018. 12. 18.>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5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1. 3. 7., 2017. 3. 8., 2018. 9. 18., 2018. 12. 18.>

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 1. 병가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
- 2. 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7. 15.]

**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 ① 결근 일수·정직 일수·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frac{\text{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12\text{개월}} \times \text{해당 연도 연가 일수}$$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 2. 연도 중 퇴직 또는 임용되는 경우. 다만,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수
-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⑤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 일수를 공제한다.

[본조신설 2018. 12. 18.]

[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5로 이동 <2018. 12. 18.>]

**제7조의3(연가 당겨쓰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1년 미만	5
1년 이상 2년 미만	6
2년 이상 3년 미만	7
3년 이상 4년 미만	8
4년 이상	10

[본조신설 2018. 12. 18.]

[종전 제7조의3은 제7조의6으로 이동 <2018. 12. 18.>]

**제7조의4(연가 사용의 권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해 공지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본조신설 2018. 12. 18.]

[종전 제7조의4는 제7조의7로 이동 <2018. 12. 18.>]

**제7조의6(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4. 2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6. 30.>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 5. 31., 2018. 12. 18.>

⑦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 4. 25., 2018. 12. 18.>

⑧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제7조의8(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같은 영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38조의15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휴가는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제7조의6제6항·제7항 및 제7조의7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다.

## □ 지방공무원 복무 및 징계관련 업무 참고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1037호(2019.3.4.), 경상남도 인사과-6632호(2019.3.6.)]

### 자녀돌봄휴가와 육아시간(혹은 모성보호시간)의 같은 날 사용 가능 여부

Q. 소속 공무원이 첫째자녀에 대한 자녀돌봄휴가와 둘째자녀에 대한 육아시간(혹은 모성보호시간)을 같은 날 사용하고자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당 특별휴가들의 허가가 가능할까요?

A. 자녀돌봄휴가와 육아시간(혹은 모성보호시간)은 같은 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을 고려하여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은 하루 총 근무시간이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경우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 따라서, 자녀돌봄휴가와 육아시간(혹은 모성보호시간)을 같은 날 사용하도록 허가할 때에는 4시간 이상(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경우 3시간 이상) 근무시간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을 같은 날 사용할 수 없음을 유의

Q.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시간외근무 명령을 할 수 있는지?

A.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은 국가가 모범적 고용주로서 선도적으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여 그 대상과 시간을 확대한 것입니다.

- 따라서,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시간외근무 명령이 불가합니다.

※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을 이미 사용하였으나, 당일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특별휴가는 연가로 변경하여야 함

## 육아시간의 휴가일수 산정법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제7항에 따른 육아시간은 24개월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24개월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 2020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 참여마을 모집 공고

“2020년 거창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참여 희망 마을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19년 3월 20일

## 거창군수

### 1. 사업규모

- 예상 사업비 : 약 22억원 정도(국비 11, 지방비 9, 자부담 3)
- 예상 사업량 : 태양광 200개소, 태양열 100개소, 지열 3개소
- 설치 에너지원 : 태양광, 태양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

### 2. 신청대상

- 동일 최소 행정구역단위(리)에 있는 마을로 사회복지시설, 단독주택, 경로당, 마을회관 등 30개소(가구) 이상
- 각 읍·면에 리별 신청자수가 많은 지역, 기존 보급된 마을의 고도화, 특정지역(댐상류, 감악산 풍력주변 등)을 우선순위로 선정하고 설치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업량 기준 대상자를 최종 선정

### 3. 사업비(추정)

(단위:천원, VAT포함)

구분	에너지원	설치용량	총 설치비	보조금	민간부담금	비고
주택	태양광	3kW	6,300	5,360	940	
	태양열	6㎡	5,295	4,505	790	
	지열	17.5kW	21,262	16,862	4,400	

※ 설치비용 및 보조금, 민간부담금은 추후 변동 가능하며, 기본 설치비용 외 추가 비용은 자부담임

※ 태양광·태양열·지열 개별설치 가능하며, 경로당은 민간부담금 없음

### 4.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거창군 관내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고, 거창군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거창군 관내에 소재하고, 건축물관리대장 소유자와 신청인이 동일하여야 하며, 동일 최소 행정구역단위(리) 또는 마을대표로 총괄 신청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을 것.

### 5. 접수일정 및 선정방법

- 공고기간 : 2019년 3월 20일(수) ~ 4월 19일(수)
- 접수일정 : 2019년 3월 20일(수) ~ 4월 19일(수)
- 접수처 : 각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 선정방법 : 각 읍면에 리별 신청자수가 많은 지역의 연접지역을 우선순위로 선정하고 설치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여 대상지역 선정
- 제출서류 : [첨부 1]신청서 및 내역서(마을, 개별), 건축물 대장 각 1부
- 문의처 :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에너지담당(☎ 055-940-3711)

### 6. 유의사항

- 사업시행에 따른 모든 절차 및 기준은 한국에너지공단 융복합지원 사업기준을 적용함
- 기타사항은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함
- 사업대상 지역과 범위에 미 선정 될 경우 또는 최종 한국에너지공단 공모사업으로 사업대상지로 미 선정 될 경우 취소됨

붙임 : 참여 신청서 각 1부. 끝.

## 2020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마을별 참여 신청서

<b>접수일시</b>	2019. . .		
<b>마을명</b>	거창군 읍·면 ○○마을		
<b>마을이장</b>	○○○	<b>연락처</b>	
<b>설치장소</b>	○ 설치가구수 : ○ 설치소재지 :                    시(군·구)    리(동) 일원		
<b>세부내역</b>	에너지원	가구수	용량(kW)
	태양광	20	60
	태양열	10	175
	지 열		
	계	30	235
<p>상기 마을은 거창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붙임 1. 융복합지원사업 참여 신청내역 1부                  2. 개인별 참여 신청서 각 1부</p> <p style="text-align: right;">2019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마을이장 :    (서명 또는 인)</p> <p><b>거창군수 귀하</b></p>			

[붙임 1]

## **‘20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참여 신청내역** *[예시]*

연번	마을명	건물 종류	신청자	에너지원	용량 (kW· m <sup>2</sup> )	주소	연락처	비고
1	○○마을	주택	○○○	태양광	3	거창읍 아림길 11		
				태양열	6.0			
2	○○마을	주택	○○○	태양광	3	거창읍 아림길 12		
				-	-			
3	○○마을	주택	○○○	-	-	거창읍 아림길 13		
				태양열	6.0			
4	○○마을	경로당	○○○	-	-	거창읍 아림길 14		
				태양열	6.0			
5	○○마을	건물	○○○	태양광	3	거창읍 아림길 15		
				지열	17.5			

## 20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개별 참여 신청서

신청자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설치장소			
설치희망에너지원	<input type="checkbox"/> 태양광 3kW	<input type="checkbox"/> 태양열 6.0㎡	<input type="checkbox"/> 지열 17.5kW
신청형태	<input type="checkbox"/> 주택 <input type="checkbox"/> 건물 <input type="checkbox"/> 경로당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 ( )		
건물방향	<input type="checkbox"/> 서향 <input type="checkbox"/> 동향 <input type="checkbox"/> 남향 <input type="checkbox"/> 북향	'18년 전기사용량 및 요금(월평균)	kWh 원
건물형태	<input type="checkbox"/> 콘크리트식 <input type="checkbox"/> 조립 판넬식 <input type="checkbox"/> 조적식(벽돌) <input type="checkbox"/> 기타( )	'18년 난방비 사용 요금(월평균)	원

- 유 의 사 항 -

1. 주택 설치용량 : 태양광(전기) 3kW, 태양열(온수) 6.0㎡, 지열 17.5kW  
2. 사업대상 지역과 범위에 미 선정 될 경우 또는 최종 한국에너지공단  
공모사업으로 사업대상지로 미 선정 될 경우 자동 취소됨.

상기 본인은 2020년 거창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며, 본 사업에 대한 자료의 활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  
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도 동의합니다.

※첨부 : 건축물관리대장(소유자기준으로 신청) 1부

2019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